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31일, 맹성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3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맹성규의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

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정비업·공항운영자·교육기관·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1. 제안 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 12월 해당 평가 대상임.

이에 개정안은 해당 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형식증명 규정의 보완 등(안 제20조)

개정안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식증명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고, 형식증명을 받은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⑥ (생략)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58조제2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

현행	개정안
<신설>	<u>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u> <u>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u> <u>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u> <u>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u>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형식증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을 설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으로,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발급되는 ‘**형식증명**’, 산불진화 등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발급되는 ‘**제한형식증명**’으로 나뉘며,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아야 함(법 제20조).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단계별 인증 구분 】

설계 단계	▶	형식증명 항공안전법 제20조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국토부 고시)에 적합함을 증명 ※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C) : 항공기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으나, 특정목적(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운용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
		형식증명승인 항공안전법 제21조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설계, 제작과정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
생산 단계	▶	제작증명 항공안전법 제22조	형식증명 받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를 인가된 설계에 따라 제작업체가 양산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
운영 단계	▶	감합증명 항공안전법 제23조	개별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서류, 상태검사 등을 통해 증명
	▶	감합성 개선지시 항공안전법 제23조 제9항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등에 설계, 제작결함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항공당국에서 소유자들에게 검사, 교환, 수리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비행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시

한편, 현행법 제58조제2항는 형식증명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제5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제58조제2항 위반 시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법 제48조의2),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법 제86조) 등 각종 증명 등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식증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다른 조항과 같이 제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식증명의 취소·정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제20조(형식증명)	제58조제2항 위반에 대한 형식증명 등의 취소 또는 정지 규정 없음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ICAO 부속서 19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 】

원문	국문
3.3.2 Safety management system obligations	3.3.2 SMS 의무
3.3.2.1 States shall require that the following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authority implement an SMS:	3.3.2.1 각국은 자국의 관리 하에서 다음 서비스제공자들의 SMS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the type design or manufacture of aircraft, engines or propellers in accordance with Annex 8;	f) 부속서 8에 의거하여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설계나 제조에 책임이 있는 조직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신설되는 안 제20조제8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법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132조(항공안전활동)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및 조사 결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¹⁾ 안 제20조제8항의 정기·수시 검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안전증명 발급 후 감독에 대한 근거를 법에 두고, 감독 주기·방식 등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증명을 취소 또는 정지

1) 「항공안전법」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비장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이하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